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의장

람

제1824호 2024. 3. 6.(수)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고시————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인천광역시 서구고시 제2024-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사업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1988-1406(1988. 12. 2.)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3-2호선, 사업명: 석남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적합하므로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인정(의제)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4763)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24. 3.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2-4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호선)
- 명칭: 석남동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2,060m²
- 사업규모: L=320m, B=6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석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연번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기정	석남동	223-942	유	198	198	황용*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				
2	기정	석남동	223-715	유	8	8	박준* 외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52-** ***				
3	기정	석남동	223-943	잡	1,645	1,645	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30-** **				
4	기정	석남동	222-84	잡	157	157	국	기획재정부				
5	기정	석남동	222-47	잡	30	30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6	기정	석남동	222-46	잡	7	7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7	기정	석남동	222-51	잡	15	15	차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석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석남동	223-942	컨테이너	가설	28.8㎡	창고	황용*	서구, 석남2동 223-**			
			웬스	EGI	24㎡	웬스					
2	석남동	223-943	조립식 가설 건축물		1,652 ㎡	공장	김종*	강남, 논현 130-**			
3	석남동	222-84	담장	L=4.5m, H=2m	9㎡	담장	김종*	강남, 논현 130-**			
			웬스	L=25m, H=2m	50㎡	웬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514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6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사항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재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 축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위원 선정절차 신설 (안 제4조)
- 다.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운영위원장 역할 명시 (안 제9조)
- 라. 분과위원회 구성 축소 (안 제10조)
- 마. 총회 정기회의 반기별 1회 소집 (안 제12조)
- 바. 안건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안 제14조)
- 사. 협의회 사업계획서 등 제출 명확화 (안 제17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미래전략과, 전화 032-560-5902, 팩스 032-560-274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5.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사항 반영 및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부 「지속가능발전법」 폐지 및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불필요한 조문 삭제 (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협의회 구성 축소, 위촉직 위원 연임 제한, 위원 선정절차 신설 (안 제4조)
- 다. 운영위원회 구성 축소, 운영위원장 역할 명시 (안 제9조)
- 라. 분과위원회 구성 축소 (안 제10조)
- 마. 총회 정기회의 반기별 1회 소집 (안 제12조)
- 바. 안전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안 제14조)
- 사. 협의회 사업계획서 등 제출 명확화 (안 제1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도 첨부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담당관, 가정보육과 합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협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앞에 “제2장 협회의 조직과 기능” 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150명” 을 “80명” 으로,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하되” 를 “하되 두 차례만” 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선출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30명” 을 “13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을 보좌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제1항 중 “5개” 를 “3개”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명” 을 “25명” 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연” 을 “반기별”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안전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부치는 안전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총회: 구청장, 주민대표, 기업대표
2. 운영위원회: 주민대표, 기업대표

② 의장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안전을 부치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처리 후 10일 이내에 의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국제연합 환경개발 회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의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주민·기업·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 협의하여 작성코자 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주민·기업·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제2조의2(기본이념)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환경 등 자원의 개발과 보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신 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에 관한 사항
2.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3.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계몽사업 및 시민참여 운동 전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루는 발전을 말한다.

<삭 제>

제2장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

제3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 실천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제2장 협의회 조직과 기능

제4조(협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업대표, 주민대표 등 3명의 공동대표를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④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구의원, 공무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제4조(협회의 구성) ① -----

----- 80명
----- 구성하되, 위
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
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하
되 두 차례만 ----. -----

-----.

⑤ 위원 선정절차 및 위원 선출 방
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3명 -----
-----.

<신 설>

③ (생 략)

제10조(분과위원회) ①협회의 사
업을 전문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5개 이내의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는 분과위원장을 포함
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③ (생 략)

제12조(회의) ① (생 략)

② 총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
하고, 임시회의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③·④ (생 략)

제14조(의안의 처리결과 통보) 운영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와 각 분과위
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
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공동대표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의장단을 보좌하
며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0조(분과위원회) ①-----

----- 3개 -----
-----.

② -----
- 25명 -----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반기별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안건 사전승인 및 결과보고)
① 운영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
원회에 부치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의장단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1. 총회 : 구청장, 주민대표, 기업대표

2. 운영위원회 : 주민대표, 기업대표

② 의장단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의장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이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 그 안전을 부치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처리 후 10일 이내에 의장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제출) 협의회는 푸른희망 서구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매년 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이들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6. 생략

